

소상공인 복지법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2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오세희 · 전진숙 · 김종민
송옥주 · 이수진 · 장철민
허성무 · 박정현 · 권향엽
전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가족종사자 또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고, 사회보험·공제·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및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경영·위기·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
- 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소상공인 복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권리 보호 및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위기 소상공인”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판단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가족종사자”란 소상공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상공인복합지원”이란 시장상황의 경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위험을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상공인이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건강 및 생활안정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보험, 공제, 채무조정 및 재기 등 지원이 연계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복지 정책의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회안전망 구축 및 운영 방안
3. 위기 소상공인 예방 및 대응 체계
4. 재기 및 전직 지원 정책
5. 가족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
6. 자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사업별 추진 일정, 자원 배분 및 성과지표가 포함

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의 소득 및 부채 현황
2.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3. 가족종사자 현황
4.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의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복지지원의 집행 및 관리
2.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에 대한 상담
3. 소상공인복합지원 관련 정보제공
4. 위기 소상공인 판단 및 소상공인복합지원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기 소상공인

제10조(경영상황 위기징후의 포착 및 위기 소상공인 판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위기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포착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은 소상공인 관련 일반 현황 및 변화 추이, 지역경제의 위험 및 불확실성, 개별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곤란, 폐업 위험 등 경영상 어려움, 개별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생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포착,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확인 및 분석을 거쳐 위기 소상공인 여부 및 그 위기의 정도를 판단(이하 “위기 소상공인 판단”이라 한다)한다.

④ 그 밖에 위기 소상공인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절차·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공 및 시스템의 이용·연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개별 소상공인 또는 가족종사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시스템의 이용·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제공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시스템 연계의 상세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 및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명의인의 재산 및 채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동의·제공요청·제공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상공인복합지원

제13조(소상공인복합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금융, 고용 및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상공인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창업, 경영, 위기, 폐업 및 재기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위기 소상공인에 대하여 채무조정, 복지지원 및 재기지원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하되, 위기 정도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보험 지원) ① 국가는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홍보 및 그 밖에 가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5조(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조정

② 국가는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소상공인복지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공공요금, 통신비 등 고정비용 지원
3. 가족돌봄 지원
4. 정신건강 지원
5.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소상공인복지지원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현물제공 또는 이용권 지급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전담기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집행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담기관에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상공인복지지원의 상세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기지원) ① 국가는 위기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교육
2. 취업 및 전직 지원
3. 재창업 지원

4. 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위기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기지원과 제15조에 따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제사업)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 대비를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소상공인공제는 소상공인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③ 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원의 조달) 국가는 소상공인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것을 포함한다)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분리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소기업공제와 소상공인공제로 분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상공인대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